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하고,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조기경보지수”를 삭제하고 “정량·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” 강화
나.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
다. “경제위기대책본부”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다. 협의사항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(조례안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, 각 호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)
 - (일부수용) 제5조제1항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항으로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, 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에 반영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2. 15. ~ 3. 6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김혜선 (☎ 2133-5220)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”를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작성·배포”를 “성별,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·배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20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임명하거나”를 “임명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,”를 “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”로, “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”를 “경우에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7일”을 “15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제6항 중 “담당 과장이 된다”를 “담당사무관이 맡는다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)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,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“조기경보지수”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·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.</u></p> <p>4. <u>“모니터링”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·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·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-----<u>이</u>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.</p> <p>1. <u>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1. ~ 4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 ① 시장은 경제위기예측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</p>	<p>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 ① ----- -----</p>

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(이하 “대응매뉴얼”이라 한다)을 작성·배포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

----- 성별,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·배포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 둘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

----- 20명 -----
---- 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말고,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.

③ -----
----- 임명 또는 ----- <후단 삭제>

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
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
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
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
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
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
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
씩 개최하되, 경제상황 등을 고
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
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
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
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회의에
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
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
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⑤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·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같음)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 경제상황 모
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
거나 -----
----- 경우에 소집하고, 소집 사
유 종료 시 해산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15일 --

----- . 다만, 긴급하거나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<신 설>

제13조 · 제14조 (생략)

⑥ -----

----- 담당사무관이 맡는다.

제13조(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)

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,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.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“조기경보시스템 삭제”, “경제상황점검위원회 비상설화”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사안이기에 부수 비용이 미발생

4. 작성자

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김혜선(02-2133-5220)